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333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3334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1194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준현

피고, 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선영

2. C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이창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윤진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가단11943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 피고 C은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심판결 주문 중 각 "별지목록"을 모두 "별지1 목록"으로, 주문 제3의 가.항 중 "각 이행하고,"를 "각 이행하라."로 고쳐 쓰고, 주문 제3의 나.항을 삭제하여 정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과 D 사이에,

1)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22. 4.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2)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22. 4.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다. D에게,

1)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22. 5. 17. 접수 제9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C에게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별지목록"을 모두 "별지1 목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바. 별지1 목록 제3, 6,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D 소유의 총복 괴산군 ○ 전 737m²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P, Q(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R 등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지급 전인 202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카단21289호로 피고 C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45,600,744원을 청주지방법원 2024년 금 제1902호로 공탁하였다. 원고는 2024. 6. 12. 위 경매절차에서 합계 23,271,919원(= 15,065,047원 + 8,206,872원)을 배당받았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갑 제1, 2, 5, 7호증의"를 "갑 제1, 2, 5, 7, 10호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행의 "변제받은 사실은"을 "변제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3,271,919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잔존 판결금 채권[= 원본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7,077,110원(= 2020. 10. 7.부터 2022. 4.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7,479,452원 - 가집행을 통하여 변제받은 7,130,423원 - 배당액 23,271,919원) 및 위 원본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D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은 2022년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고양시 일산서구 S아파트 T호, 평택시 V건물 W호와 X호, 충북 괴산군 ○ 전 737㎡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S아파트 T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 채권최고액 9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었다. 위 V건물 W호와 X호에 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Z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최저매각가격인 493,000,000원으로는 원고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및 절차비용 515,786,421원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별지1 목록 제3, 6,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충북 괴산군 ○ 전 737㎡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D에 대하여 원금 27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 AA 등이 있어 원고의 채권에 한참 못 미치는 23,271,919원만을 배당받았다.

② 원고는 2022. 3. 30. 관련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판결의 가집행에 기하여 2022. 4. 15.경부터 2023. 2. 27.경까지 채무자 D의 여러 금융계좌를 압류하였으나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③ 피고 B은, D이 E, F에 대하여 2020. 7. 3.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가6), E, G에 대하여 2020. 5. 8.자 6,286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가7), G에 대하여 2020. 5. 22.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가8)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D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점,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들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D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C은 지인 소개로 D을 알게 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은 2022. 4. 2.경 D을 지인 AB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불과 3일 후인 2022. 4. 5.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C이 D을 소개받아 20,000,000원을 처음 대여하기로 한 시기는 원고가 관련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2022. 3. 30.과 매우 근접하고, 돈을 대여하기로 한 결정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 C은 AB으로부터 D을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D이 돈을 차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D의 변제자력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D에 대한 자금대여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② D은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이 잘못되어서 이를 수습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제1심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요지 제9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1, 지상권설정등기1을 경료할 2022. 4. 25.경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채권자 AC이 2021. 9.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22. 3. 15. 취하한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였다.

③ 피고 C은 D에게 2022. 4. 8. 19,171,000원을 지급할 때는 D의 AD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가 원고가 2022. 4. 15. D의 AD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2022. 4. 25.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할 때에는 위 채권압류에 포함되지 않은 D의 AE조합 계좌로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D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바, 위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따라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1, 2 및 지상권설정계약 1, 2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1, 2,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 1, 2를 각 마쳐주었으나, 별지1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소멸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은 피고 C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1, 2 및 지상권설정계약 1, 2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분에 따라 피고 C에게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별지